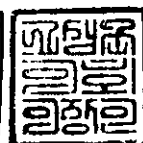


議案番號	第 273 號
議決年月日	1995. 4. 7. (제 32 회)

議決事項	
	원안 가결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提出者	固城郡守
提出年月日	1995. 3. 31.

#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95.8.31

제 출 자 : 고성군수

의 인	273
번 호	

## 1. 개정시유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의 과징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점용료 산정기준표[별표1]의 제2호중 점용물의 종류란에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을 삽입함.

나. 제3호 긴관의 범위에 "들출간관"도 포함토록하여 점용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등의 도로점용에 있어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개별관의 직경을 합한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신정 하도록 개선함.(비고란 제7호)

## 3. 참고사항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382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중 "하수도관"다음에 "전기관.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고, 제3호중 "간판"을 각각 "간판(출출간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호 현수막의 점용단위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하고, 비고란의 제7호를 제8호라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전별로 전체관을 의점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직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								[별표1]								
점용물의 종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료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료	
		점 용 단 위	기 간 단 위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생략)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전기관, 전기통신관,----- -----.			(현행과 같음)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판, 현수막, 아취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생략)				3. 광고탑, 광고판, 간판(출출간판울 포함한다), 시설안내판, 현수막, 아취이와 유사한 것.	----- ----- 간판(출출간판울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현수막	점용면적 1㎡		(생략)			현수막		표시면적 1㎡			(현행과 같음)				
※ 비 고 1 - 6(생략)  7(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울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